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

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3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5년 3월 10일
나. 발의자: 이순우 의원 외 4명
다. 회부일자: 2025년 3월 20일
라. 상정일자: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3. 24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순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정월대보름은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로서, 다양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온 중요한 행사임.
- 영등포구에서도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행사를 개최해 왔으나,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음.
- 이에 따라,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예산 지원 및 신청 (안 제3조 및 제4조)

- 민속행사 실시방법 (안 제5조)
-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 (안 제6조)
- 지도 및 감독 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조례안은 전통 민속 문화 계승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됨.
- 주요 내용으로
 - 동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목적, 안 제2조에서 정의와 같은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,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민속행사 지원 관련 사항,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행사 실시 방법 및 협조 규정, 안 제7조에서는 예산 지원 시 지도·감독 규정을 두어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 - 안 제3조에서는 각 호에서 규정된 민속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,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신청 가능 단체를 규정하고 지원 신청 시 행사계획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였으며,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동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를 추진하거나 구 합동행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행사의 안전관리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계부서 및 기관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음. 또한 안 제7조는 안 제3조에 의거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도·감독 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됨.
- 검토 결과
 -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의거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이에 “전통놀이”를 포함하는 개념이며,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(윷놀이, 연날리기, 쥐불놀이 등 각종 민속놀이)가 포함되므로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할

것임.

- 또한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예산의 지원 등 기반 조성 의무가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겨짐.
- 아울러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전통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속 놀이 등 행사를 통하여 동 직능단체와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구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순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88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3. .

발 의 자 : 이순우·이규선·김지연
전승관·정선희 의원
(5인)

1. 제안이유

- 가. 정월대보름은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로서, 다양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온 중요한 행사임.
- 나. 영등포구에서도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행사를 개최해 왔으나,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음.
- 다. 이에 따라,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나. 예산 지원 및 신청 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민속행사 실시방법 (안 제5조)
- 라.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 (안 제6조)
- 마. 지도 및 감독 (안 제7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: 생략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
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세시풍 속을 계승·발전시키고, 구민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정월대보름 민속행사”(이하 “민속 행사”라 한다)란 정월대보름(음력 1월 15일) 전 7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내 시행하는 행사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민속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윷놀이, 연날리기, 투호, 제기차기, 팽이치기, 쥐불놀이, 널뛰기 등 민속놀이
2. 전통 민속음식 경연 및 시식 행사
3. 강강술래, 달집태우기, 불꽃놀이 등 그 밖의 민속행사와 부대행사

제4조(지원 신청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민속행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단체는 행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동 직능단체
2. 민속행사의 주최가 가능한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

제5조(실시방법) 민속행사는 원칙적으로 동별로 실시하되, 각 동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합동행사로 진행할 수 있다.

제6조(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) 구청장은 민속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은 행사장 안전 점검, 시설정비, 홍보, 질서 유지, 긴급 대응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 및 감독)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